

2025년 제12회 건축위원회 심의 주요결과

[1호 안건: 마전동 1132-11, 전세사기 건축물 양성화에 관한 사항]

운영기관	인천광역시서구		심의일자	2025. 12. 23.
건축종별	[] 신축, [] 증축, [] 대수선, [○] 기타			
건축주	성명(법인명) 한국토지주택공사			
대지현황	대지위치 인천광역시 서구 마전동 1132-11번지			
	지번	마전동 1132-11	관련지번	
	대지면적	1,357.7㎡	용도지역(지구, 구역) 제2종일반주거지역, 지구단위계획구역	
건축물현황	건축면적	542.8㎡	건폐율	39.98%
	주용도	공동주택(32세대)	구조	철근콘크리트구조
	최고높이	16m	용적률	158.57%
			층수	지하: -층/ 지상: 5층
			건축물 동수	2동
			연면적	합계 2,152.88㎡
구 분	주요 심의 내용			
(건축)분야	(심의위원1) ○ 권고사항: 매입 후 안전난간 설치			
	(심의위원2) ○ 안전난간을 설치하여 안전에 관한 조치를 권장함			
	(심의위원3) ○ 안전난간 설치 또는 매입 후 합법화(외부창을 제거 등) 권고			
	(심의위원4) ○ 증축부분 안전난간을 차후에 설치할 것을 권고함			
	(심의위원5) ○ 원안의결로 진행하며 건축물 수선 예산 수립 후 안전난간을 설치할 수 있도록 검토 바랍니다.			
	(심의위원6) ○ 추후 안전난간 설치하여 사용하도록 진행하여야 할 것			
(구조)분야	(심의위원7) ○ 특이사항 없음			
	(심의위원8) ○ 이견 없습니다. (건축구조 분야)			
(시공)분야	(심의위원9) ○ 매입이후 별도 검토를 통한 향후 해당부위 안전난간 설치 요망			
(토질및기초)분야	(심의위원10) ○ 의견없음			
(행정)사항	○ 사전검토의견 및 건축위원회 심의의견 반영 할 것 ○ 심의내용을 반영하는 조건으로 동의하며, 이행여부는 인·허가권자가 검토·확인 하시기 바람 ○ 구 건축위원회 심의는 「건축법」 제4조 규정에 따라 정한 건축계획 관련 기술적인 사항을 사항을 심의하는 것으로, 건축 인·허가 때 관계 법령 및 기준 등에 적합 하여야 함			
심의결과	[○] 원안 의결 [] 조건부 의결 [] 재검토 의결 [] 부결			

근거조문

건축위원회 심의기준	9.3 심의결과는 다음 각 목 중 하나로 정하며, 조건부 및 재검토 의결은 이행 가능한 명확한 대안이나 재검토의 사항을 명확히 하여 위원장이 과반 수 이상의 동의를 받아 정하도록 한다. 가. 원안의결 : 상정 안건에 대하여 수정 없이 원안대로 의결 나. 조건부 의결 : 상정 안건에 별도의 내용을 부가하거나 제외하는 등의 일부 조건을 부여하여 건축사가 반영하도록 하는 의결 다. 재검토 의결 : 상정 안건을 다시 검토 보완하여 추후 위원회에서 다시 심의토록 의결 라. 부결 : 상정 안건이 건축법령 등에 위반되거나 심의요건이 불충분하여 부결시키기로 의결. 단, 2.3 가목에서 라목까지 사유에 해당하여야 한다. 9.6 위원회 심의 주요결과는 [별지 제2호]에 따라 홈페이지에 공개하여야 하며, 동 서식에 따라 건축행정 시스템에 등록하여 건축주에게 공개하여야 한다.
---------------	--

작성방법

1. 심의 결과는 “원안의결”, “조건부 의결”, “재검토 의결” 또는 “부결” 중 하나를 선택하여 표기
2. “주요 심의 의견” 란은 개인 식별(이름, 소속 등)에 관한 사항이 공개되지 않도록 기재(필요 시 심의위원은 표기를 甲, 乙, 丙으로 하는 등 임의로 기재 가능)

210mm×297mm[백상지 80g/㎡]